

징계처리 관련 정보공개 지침

제정 2014. 12. 31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연구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한 정보공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 임직원의 징계와 관련한 정보의 공개에 관해 다른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.

제3조(정보공개 주관부서) ①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인사담당부서로 한다.
②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처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.

제4조(정보공개 대상) ① 정보공개 대상은 다음과 같다.

1. 징계제도 관련 정보 : 징계양정 기준, 감경제한 대상 부패행위, 의무적 고발대상,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,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 등
2. 징계 운영현황 : 부패행위 유형, 금품·향응 수수현황, 징계처분결과 등

②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문서내용 중 이름·주민등록번호·주소 등 특정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정보공개 방법 및 절차) 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는 연구원의 홈페이지에 적절한 방법으로 게시한다.
②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 중 내부적발에 의한 부패행위자 징계운영 현황은 연구원의 내부전산망에 우선 공개하고 외부적발에 의한 징계운영 현황은 연구원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알리오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6조(공개기간) 제5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기간은 홈페이지에 등록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. 다만,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해당 정보의 공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.

부 칙 <2014.12.31>

(시행일) 이 지침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